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진술서를위한명령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N.C. Gen. Stat. §§ 96-4(c) 및 96-15(e)에의거하여,이사유는항소서류번호의항소심판의(기각명령) (결정)에대한(원고의)(고용주의)항소를고려하기위해평가위원회(“Board”)앞에제기되었습니다.항소에서,는재청문회를요청합니다(사본첨부).

의재청문회요청의장점을완전히고려하기위해,는일모든당사자들에게우편발송된청문회통지에서제공된것과같이일항소심판앞에청문회에참석하지못한,그리고/또는예정된청문회의날짜및/또는시간을변경하도록요청하지못한의주변특정상황(이름들,장소들,날짜들,시간들,등.)을설명하거나응답하는진술서를서명하고공증인앞에서맹세하여제출해야합니다.또한,는그가/그녀가/그것이이문제에관해가질수있는정보에대한진술서를제출할수도있습니다.

위언급된양식의진술서는 상대당사자들에게제공되어야하며사본이상대방에게제공되었음을입증하는성명서를포함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선서진술서는일오후 5:00 동부표준시까지, 평가위원회, Post Office Box 28263, Raleigh, NC 27611-8263 에서 수령 되어야합니다.당사자가선행된조건중어느하나라도준수하지않는경우,평가위원회가검토할때에진술서를고려하지않거나의재청문회에대한항소/요청이거절되는결과를초래할것입니다. 읽을수있고,팩스로보내진사본은 24 N.C. Admin. Code 24A .0106 에따라(919) 715-7193 으로팩스로전송된날에받은것으로간주됩니다.

그렇게명령됩니다.

평가위원회의의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항소에참여하여이결정에동의합니다.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이.

평가 위원회

위원장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년 6월 30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항소 제기:

결정 전달: